

##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 출연금 배분기준 및 출연 종료일

제정 2006.10.30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6-29호  
 개정 2008.01.14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8- 3호  
 개정 2009.03.04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9-16호  
 개정 2009.08.24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9-35호  
 개정 2010.09.17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0-32호  
 개정 2013.12.30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3-63호  
 개정 2014.02.28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4- 9호

### 1. 은행등(제 1금융회사) 출연금 배분기준

지역신용보증재단법시행령 제5조의4제1항(출연금의 배분기준 및 배분시기)에 의한 지역신용보증재단(이하 “재단”이라 한다)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(이하 “중앙회”라 한다)에 대한 은행등의 출연금 배분기준은 다음과 같다.

가. 재단과 중앙회간 배분비율 : 70 대 30

나. 재단 배분액의 기준별 배분비율

기본배분	재정상황	보증실적	지자체 출연실적	특수상황
25%	15%	35%	20%	5%

다. 재단별 출연금 산출식 : ① + ② + ③ + ④

- ① 기본배분 : 재단 총 출연금 × 25% × 1/16
- ② 재정상황 : 재단 총 출연금 × 15% × 전년도 지자체별 재정자립도

### 지수 반영율

- ③ 보증실적 : 재단 총 출연금 × 35% × (당해 재단의 전년도 보증공급액 / 전년도 재단 총 보증공급액)
- ④ 지자체 출연실적 : 재단 총 출연금 × 20% × 전년도 지자체별 출연금 반영률
- ⑤ 특수상황 : 재단 총 출연금 × 5%
  - \* 특수상황 배분액은 중앙회에 일괄납부 후 각 재단의 재해특례보증규모 비율에 따라 다음연도 3월중 중앙회가 배분

### [재정자립도지수 반영률]

재정자립도지수	1위	2위	3위	4위	5위	6위	7위	8위
반영율	0.55/16	0.60/16	0.65/16	0.70/16	0.80/16	0.85/16	0.90/16	0.95/16

9위	10위	11위	12위	13위	14위	15위	16위
1.05/16	1.10/16	1.15/16	1.20/16	1.30/16	1.35/16	1.40/16	1.45/16

### [지자체 출연실적 반영률]

출연실적	1위	2위	3위	4위	5위	6위	7위	8위
반영율	1.45/16	1.40/16	1.35/16	1.30/16	1.20/16	1.15/16	1.10/16	1.05/16

9위	10위	11위	12위	13위	14위	15위	16위
0.95/16	0.90/16	0.85/16	0.80/16	0.70/16	0.65/16	0.60/16	0.55/16

라. 단, 업무처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긴급하게 소요되는 재단의 계약직 인력 운용에 필요한 인건비 및 제 비용은 재단과 중앙회간 배분 이전에 우선 공제하여 각 재단에 배분하되, 인원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범위에서 운용한다.

하며, 초과 출연한 금액은 3개월 이내에 출연 경로를 통해 반환한다.

## 2. 농업협동조합등(서민금융회사) 출연금 배분기준

농업협동조합·수산업협동조합·상호저축은행·새마을금고·신용협동조합·산림조합의 출연금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시행령 제5조의4제2항에 따라 지역신용보증재단(이하 “재단”이라 한다)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(이하 “중앙회”라 한다)에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배분한다.

- 가. 서민 보증부협약대출(이하 “햇살론”이라 한다)의 보증재원으로 출연한 출연금은 사업자 보증재원으로 100분의 30을 배분하고, 근로자 보증재원으로 100분의 70을 배분한다.
- 나. 사업자 보증재원은 재단에 100분의 20을 배분하고, 중앙회에 100분의 80을 배분한다.
- 다. 나목의 각 재단별 배분은 햇살론 보증공급액 비율 및 목표달성도에 따른다.
- 라. 각 재단별 배분시 햇살론 보증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부담분의 출연 여부를 확인 후 출연금 납부실적을 반영하여 배분한다.
- 마. 단, 보증재원(재보증회계 포함)의 현저한 불균형 등으로 햇살론의 정상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,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배분기준을 달리 운용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정산할 수 있다.
- 바. 서민금융회사가 중앙회와의 별도의 협약에 따라 햇살론의 보증 재원을 임의출연한 경우,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기준에 따라 배분한다.

## 3. 서민금융회사 출연 종료일

지역신용보증재단법시행령 제5조의3제6항의 농업협동조합등의 출연 종료일은 서민금융회사의 출연 총액이 아래의 금액에 도달하는 시점으로

[금융회사별 출연 총액]

금융회사	농업협동조합	수산업협동조합	상호저축은행	새마을금고	신용협동조합	산림조합
출연총액(억원)	3,859	334	2,000	2,362	1,362	83

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2. (재검토 기한)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248호)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,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